

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남진삼 의원)

의안 번호	13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6월 5일

발 의 자 남진삼 의원

찬 성 자 김광성, 이창열, 박춘희의원

1. 제안이유

평창군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 대여하는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, 제설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및 유류비 등의 지원책 마련으로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참여를 독려하고 사기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제설장비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
나. 제설장비의 운영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
다.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보험가입 및 지원에 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나. 입법예고: '23. 4. 26. ~ 5. 15. (20일간), 의견제출 0건

다. 집행기관의견수렴: 2023. 4. 6. ~ 2023. 4. 13.(8일간), 아래표 참조

조 례 안	건 설 과		의회 의견 - 부분수용
	검 토 안	수정사유	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제설장비"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서 구입한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제설장비"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평창군(이하 "군"이라 한다)이 <u>구입하여 읍·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.</u></p>	<p>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의 구분 명확화</p>	<p>○ 안 제2조와 관련, 장비의 구분 명확화를 위하여 읍·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함</p>
<p>제4조(관리) ① 제설장비는 읍·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제설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 다만, 총괄적 관리·감독은 제설담당과장(이하 "총괄관리자"라 한다)이 한다. 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·반입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관리) ① <u>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·감독은 제설담당과장(이하 "총괄관리자"라 한다)이 한다.</u> ② <u>제설장비는 읍·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·면 제설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</u> 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·반입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</p>	<p>관리 체계 명확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 강화</p>	<p>○ 안 제4조와 관련, 제1항의 총괄적 관리·감독자를 명확히 하고 읍·면의 관리책임자 및 담당팀장을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제2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함</p> <p>○ 안 제6조와 관련, 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의 확실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이 고려되어 기존 조례안을 유지함</p>
<p>제6조(자원봉사자 관리)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·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,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.</p>	<p>제6조(자원봉사자 관리)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·면별로 선정하여 관리하되,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<u>관리책임자가</u> 실시한다.</p>	<p>제설장비 운영의 효율성 강화</p>	

<붙임 1>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제설장비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제설장비”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이 구입하여 읍·면 또는 마을에서 운용하는 차량 및 트랙터 부착형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(보관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설장비를 읍·면 단위로 배정 보관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.

제4조(관리) ①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적 관리·감독은 제설담당 과장(이하 “총괄관리자”라 한다)이 한다.

② 제설장비는 읍·면장의 책임으로 관리하고 관리책임자는 읍·면 제설 작업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.

③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·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)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군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트랙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한다.

제6조(자원봉사자 관리)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·면별로

선정하여 관리하되,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.

제7조(보험가입)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제설작업 외의 사용) 제설장비는 제설작업 외에 군 관할 구역 다음 각 호의 작업에 대하여 총괄관리자 또는 읍·면장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1. 비포장 농로의 노면정리 작업
2. 농경지의 평탄 작업
3. 그 밖에 공익에 관련된 작업

제10조(사용료) 제9조에 따른 제설장비 대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·보관·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.

<붙임 2> 별지 서식

제 설 장비 반출·반입 관리대장

부서명 : (읍·면)

번호	품명	반출일자	장비 사용자	반입일자	반입 확인자	장비 이상 유무	비고
1							
2							
3							
4							
5							
6							
7							
8							
9							
10							
11							
12							
13							
14							
15						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7조(보험가입) 군수는 제설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) 군수는 제설장비 운용에 따른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와 자원봉사자의 식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5